주주님 귀하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주주님의 댁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2020년 03월 24일(화) 오전 09시 00분
-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번지 섬유센터빌딩 17층 중회의실
-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2기(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별첨1. 정관변경안)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문양근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우 선임의 건(재선임)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문종욱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구본순 선임의 건(재선임)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조남문 선임의 건(재선임)

-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서윤성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0년 03월 09일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 대표이사 강 진 원, 장 대 용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직인

생략

* 정관변경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39조【이사의 의무】	제39조【이사의 의무】	7511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선임에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	따른 개정			
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				
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u> 에	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갑사</u>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	세월14 【에/기획계 1844 12점』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				
의한다.	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선임에			
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따른 개정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u>이사 및 감사</u> 전원의 동의가				
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선임에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따른 개정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u>이사가</u> 기명날인 또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회】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삭제)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1.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감사선임에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따른 개정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u>감사위원회</u>	제6장 <u>감사</u>	감사선임에			
제46조_【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6조_【감사의 수와 선임】	따른 개정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				
회를 둔다.	명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	가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				
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법	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감사선임에			
<u>률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따른 개정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력을 구할 수 있다	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				
<u>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제47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u>산한다.</u>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여야 한다.	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감사선임에			
	그러나 정관 제46조(감사의 수와 선임)에서 정하는 원수를	따른 개정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48조_【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48조_【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선임에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따른 개정			
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u>청구할 수 있다.</u>	,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u>다.</u>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u>수 있다.</u>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	
<u>사항을 처리한다.</u>	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u>집할 수 있다.</u> 과 40 조 [자기로]	<u> </u>	
제 49 조 【감사록】	제 49 조 [감사록]	المراح إلا أحا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감사선임에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u>사의 실시요성과 그 설파를 기세하고 감사를 설시한 감사가 기병</u>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따른 개정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물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 조【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감사선임에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따른 개정
	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0
	③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	
	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0조 【사업년도】	<u>제51조</u> 【사업년도】	조문번호
<u>(이하동일)</u>	(이하동일)	변경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u>제52조</u>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9) 보 하시기 사비 시체련해서 저ੀ도 해결해보게도 가져해	① 보 취치가 사버 지체력에서 저취느 여겨게므게도 가져네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 사회사에 체다하는 겨우에는 제1하이 가 서로에 여겨게무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 사회사에 체다하는 경우에는 제1하이 가 서로에 여겨게모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u>감사위원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u>감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u>감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u>감사는</u>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갑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선익에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u>감사위원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갑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감사선임에 따른 개정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갑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갑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하는의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 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하는 1대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5년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5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3년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하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있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가내용을 보고하여야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따른 개정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갑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따른 개정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유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의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7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	감사선임에 따른 개정 감사선임에 따른 개정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익금의 처분】이하동일	제54조【이익금의 처분】이하동일	
<u>제54조</u> 【이익배당】이하동일	<u>제55조</u> 【이익배당】이하동일	조문번호 변경
제55조 【분기배당】이하동일	<u>제56조</u> 【분기배당】이하동일	
	(부칙)	시행일
		명시
	제23차 개정: 2020년 03월 24일	

<u>* 이사 선임의 건 *</u>

가. 이사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사내 이사	문양근	68.12.27.	3년	(주)브레인콘텐츠 총괄대표(현)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총괄대표	본인	이사회	재선임
사내 이사	이승우	75.02.07.	3년	(주)브레인콘텐츠 경영기획 실장(현) 파미셀(주) 대외협력실 이사	-	이사회	재선임
사내 이사	문종욱	64.08.11.	3년	(주)브레인콘텐츠 경영본부장(현) (주)이투데이 부장	-	이사회	신규선임
사외 이사	구본순	70.02.15.	3년	정진회계법인 이사(현) 공인회계사	-	이사회	재선임
사외 이사	조남문	71.09.10.	3년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	이사회	재선임

* 상근감사 선임의 건*

가. 상근감사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상근 감사	서윤성	70.12.19.	3년	NH농협은행 부행장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_	이사회	신규선임